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53652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22. 8. 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12,851,66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851,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14501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8. 13. ‘피고는 원고에게 9,247,315원 및 그중 5,633,006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8. 9. 11. 확정되었다.

나. E(이하 ‘망인’)은 2022.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등이 있고, D의 법정상속지분은 1/6이다.

다. 상속인들은 2022. 8. 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2.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D의 배우자는 2022. 11. 11.과 2022.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D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그 배우자이자 D과 피고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2008. 3. 6. 증여받은 것인 점, D은 망인이 위 증여받을 무렵인 2007. 12. 20. F으로부터 사천시 G, H 각 토지를 증여받은 점, F의 사망 후 상속인인 다른 자녀들이 D과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이 증여받은 각 토지들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사실상 F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D의 위 사전증여부분을 고려하여 향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F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D은 이미 F으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D,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D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재산분할 결과가 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2. 8. 6.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별 지 목 록

[토지]

1. 경상남도 사천시 대 235㎡
2. 경상남도 사천시 대 294㎡

[건물]

경상남도 사천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3.06㎡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부속사 33.06㎡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부속사 29.75㎡

